

●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6-09호

개선권고 재결

2025년 12월 16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1월 16일

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

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6-09호(개선권고 재결공고[인천해심 제2025-060호 (예인선 해건티1호의 피예인부선 해건9001호 좌초사건)])

사 건 명 : 예인선 해건티1호의 피예인부선 해건9001호 좌초사건

피요청자 : (주)**(***** : *****-*****)

전*** **

귀사에서 용선한 부선 해건9001호가 예인선 해건티1호에 의해 예인되어 항해 중 2022. 10. 8. 02:14경 선미 탱크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.

이 사고는 예인선 선장이 부선 해건9001호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가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나, 귀사가 해건9001호를 해저에 얹혀놓고 사석을 적재하다가 발생한 손상 부위를 임시 수리한 후 검사를 받지 않는 등 선체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해건9001호가 예인선 해건티1호에 의해 예인되던 중 다시 손상된 임시 수리 부위의 파공부를 통해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
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사에서 선박의 수밀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체 수리 시 선박이 출항하기 전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개선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.

따라서 귀사에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